

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·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2021. 6. 5.(토) 시행하는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·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24일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시험일자: 2021. 6. 5.(토) (※ 9시 20분까지 입실 완료)

※ 시험장 입장 시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유있게 시험장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시험장개방: 08:00)

2. 시험시간 및 장소

구분	직렬(직류)		응시번호	응시 인원	시험시간	시험장소	
						학교명	소재지
공개경쟁 임용시험	교육행정 (교육행정)	일반	21110001~21110793	793	10:00~11:40 (100분)	노형중학교	제주시 노형1길 28 ☎(064) 740-8901
		장애인	21120001~21120006 21120008~21120010	9			
		저소득층	21130001~21130012	12			
	사서(사서)		21210001~21210016	16	10:00~12:30 (150분)		
	기록연구(기록관리)		21310001	1			
	교육행정(장애인) *편의지원_1.5배연장		21120007	1			
경력경쟁 임용시험 (특성화고)	공업(일반기계)		21410001~21410009	9	10:00~11:00 (60분)		

※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은 2021. 4. 23.(금)까지 신청했던 응시자에게만 제공됩니다. [별첨 1]참조

※ 응시표출력: 2021. 5. 24.(월) 10:00 ~ 2021. 6. 5.(토) 10:00까지(<http://edurecruit.jje.go.kr>)

3. 응시자 준수사항

【일반사항】

가. 응시 분야별 수험생은 지정된 시험일시, 장소에서만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※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,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사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.

※ 확진자·자가격리자 응시방법은 '**8.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응시절차 안내(p.9)**' 참고

나. 시험당일 **09:20까지**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 (**응시자에 한해 08:00부터 시험실 개방**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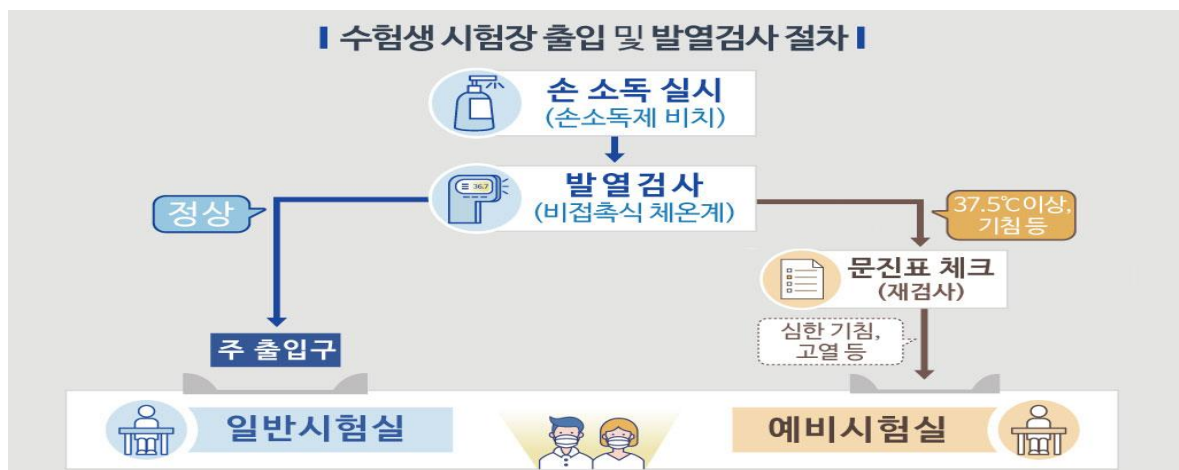
※ 입실 전 **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**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**여유있게 입실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**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(09:50분경)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**

다. 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[붙임3]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, 손소독 및 발열검사,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**(출입구 관리)** 시험장 주(主) 출입구를 단일화하고, 수험생, 시험감독관 등 **시험장 출입자 전원**에 대해 **손소독 및 발열검사(비접촉식 체온계)** 실시

- 발열검사 및 2차 문진 후 감염의심여지(발열 37.5℃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)가 있는 수험생은 **예비시험실에서 응시**
- 시험실의 **출입문·창문 등을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**를 할 예정이므로 **각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 준비**



- 라.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
- 바. 본인 확인을 위하여 **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**해야 합니다.
- ※ 응시표 출력: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(<http://edurecruit.jje.go.kr>)
- ※ **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주민등록번호 미포함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)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 하나**
- 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사.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, **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(득점 불인정 등)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**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아. 시험시간 중 **통신,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**(휴대전화, 태블릿PC, 스마트워치, 이어폰, **스마트밴드, 전자담배**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, 디지털카메라, MP3 플레이어, DMB 플레이어 등)를 **소지할 수 없습니다.**
- 자. 시험시간 중에는 **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**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(카페인·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**재입실이 불가**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**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**하여야 합니다.
- 차.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 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카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※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,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**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**통신,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워치, 스마트밴드 등) 및 탁상시계, 스톱워치, 전자시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 (★아날로그 시계만 허용)**
- 타.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【답안지 기재 및 표기】 ★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(수정액, 수정스티커 등 불가)

가. 득점은 OM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.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'컴퓨터용 흑색 사인펜'을 사용하여 <보기>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.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

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 **올바른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**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**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**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**각별히 주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답안지를 받으면 방송안내에 따라 성명, 응시직렬, 응시번호 등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**수험생 입실부터 답안지 표기요령 및 문제지 배부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으로 진행됩니다.**

라.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 간의 일치 여부, 문제 누락·과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마.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**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선택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. **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,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※ **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**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. **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**

※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수정테이프는 시험감독관이 제공하지 않으며, **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**합니다.

사. 답안지는 **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**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■■■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아. 답안지 작성이 끝나도 **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.**

【부정행위 등 금지】

가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제1항 제1호~제6호 위반행위

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,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제2항 제1호~제4호 위반행위

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정하여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한 행위
 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다.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(기재)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및 등록 안내

가.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.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 시험 전일(2021. 6. 4.(금) 24:00)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, 가산비율,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.

나.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시기 바라며,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1. 6. 4.(금) 24:00)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
다.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

라. 가산점의 허위기재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선택과목 조정점수 적용 안내

가. '조정점수제' 도입 취지

- 조정점수(표준점수)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점수입니다.
-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선택과목이 도입됨에 따라 응시자의 능력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점수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
- 조정점수는 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해줍니다.
- 난이도가 높은 과목의 경우 평균이 낮으므로, 조정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, 난이도가 낮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.

나. 조정점수제 적용

- 해당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계산식에 따라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합니다.

$$\text{조정점수} = \left\{ \frac{(\text{응시자의 점수} - \text{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})}{\text{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}} \right\} \times 10 + 50$$

- **(과락 기준)**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% 이상일 경우 (40점 이상) 과락을 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
※ (예시) 사회: ① 원점수(35점), 조정점수(41점) ⇨ 과락 아님

② 원점수(40점), 조정점수(37점) ⇨ 과락 아님

- **(가산점 부여시기)** 원점수와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과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.

※ 2022년부터는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(표준)점수 제도는 폐지됩니다.

6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조회

가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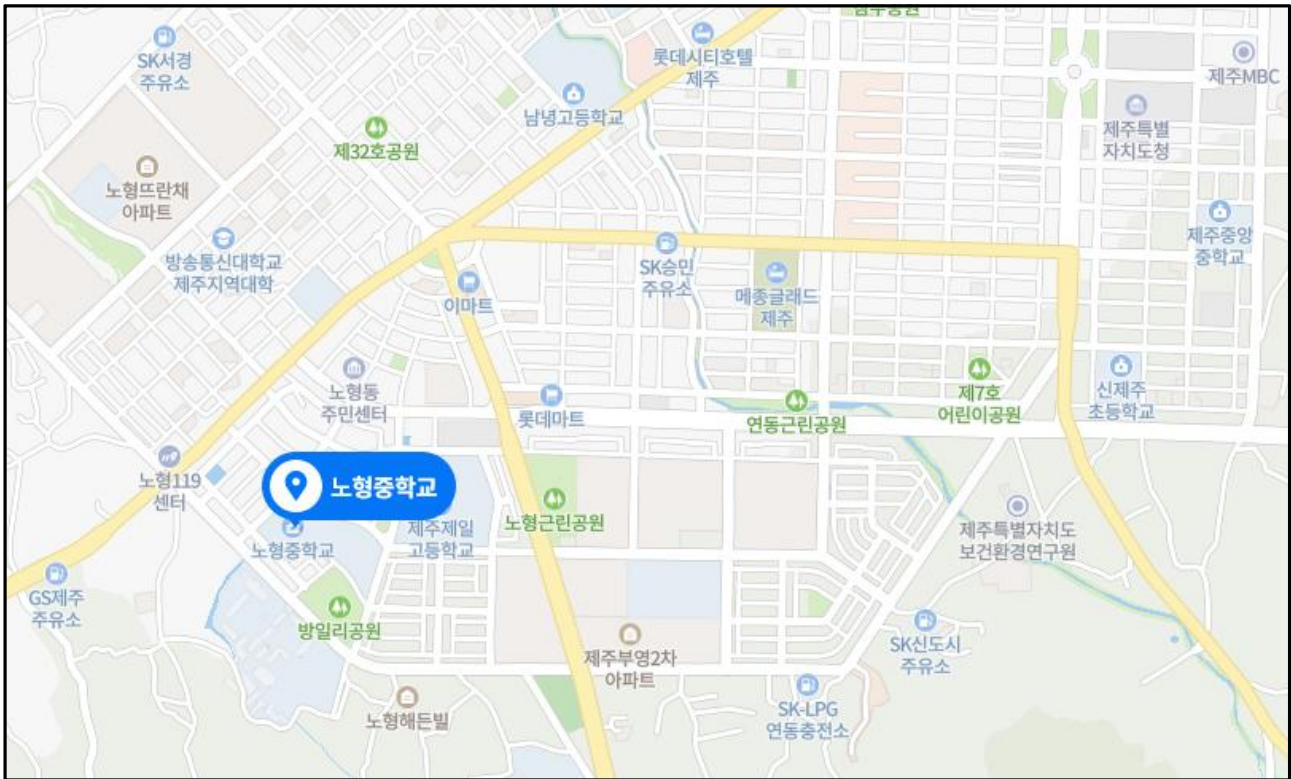
- 일시: **2021. 7. 2.(금) 10:00**
- 방법: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(<http://www.jje.go.kr>) 「뉴스/소식」
→ 「인사/채용/시험」 → 「시험정보」 → 「지방공무원임용시험」에 게시

나. 필기시험 성적 조회

-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**2021. 12. 31.까지**,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**2021. 12. 31.까지** 원서접수사이트 (<http://edurecruit.jje.go.kr>)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7. 시험장 위치도

〈노형중학교〉



▶ 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길 28 (대표전화 ☎ 064-740-8901)

※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.

8.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

※ 타지역에서 확진·격리된 경우 시험 여건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어려울 수 있음

<확진자 별도 시험장 신청 안내>

① (확진자 신고)

- 수험생은 확진자로 통보받은 즉시 수험생임을 관할 보건소 및 시험주관 부서에 유선으로 알림 (총무과 인사팀 ☎ 064-710-0625, 0624)

※ 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에게 수험생임을 알리고, 지정된 시험응시 전담 병실 배치요청

② (시험응시 신청)

-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고 응시신청

○ 신청기간: 2021. 5. 24.(월) 12:00 ~ 2021. 6. 4.(금) 18:00

○ 제출서류: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([붙임 1] 서식), 주치의 소견서

※ 유선 신청 후 이메일 제출(jim84@korea.kr 또는 별도 지정 이메일)

<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 신청 안내>

① (자가격리자 신고)

- 수험생은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은 즉시 수험생임을 관할 보건소 및 시험주관 부서에 유선으로 알림 (총무과 인사팀 ☎ 064-710-0625, 0624)

② (시험응시 신청)

-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외출허가 요청 하여 외출허가 증빙서류를 받고 기한 내 신청

○ 신청기간: 2021. 5. 24.(월) 12:00 ~ 2021. 6. 4.(금) 18:00

○ 제출서류: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([붙임 2] 서식), 외출허가 증빙서류

※ 유선 신청 후 이메일 제출(jim84@korea.kr 또는 별도 지정 이메일)

〈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〉
확진자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

□ 성 명 : _____

□ 생년월일 : _____

□ 응시번호 : _____

□ 지원사항(직렬/직급) : _____

□ 격리장소 : _____

□ 연 락 처

○ 본 인 : _____

○ 가족 등 : _____

○ 기 타 : _____

※ 별도시험장 응시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
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(2개 이상)

본인은 코로나19 확진자 판정(통보)를 받아 위와 같이 별도시험장에서
 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.

신청일자 2021. . .

신 청 인 _____ (서명)

붙임 : 주치의 소견서 1부.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

〈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〉 **자가격리자** **별도시험장** **응시** **신청서**

☐ 성 명 : _____

☐ 생년월일 : _____

☐ 응시번호 : _____

☐ 지원사항(직렬/직급) : _____

☐ 격리장소 : _____

☐ 연 락 처

○ 본 인 : _____

○ 가족 등 : _____

○ 기 타 : _____

※ 별도시험장 응시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
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(2개 이상)

본인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판정(통보)를 받아 위와 같이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.

신청일자 2021. . .

신 청 인 _____ (서명)

붙임 : 외출허가 증빙서류 1부.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

〈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〉

- ▼ 시험장 방역 및 수험생 위생관리를 위해 모든 시험실은 08:00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.
- ▼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,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.
 - ※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
 - ※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
- ▼ 발열(37.5도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장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대기시간 등에도 다른 수험생과 1.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수험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,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.
- ▼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,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양해바랍니다.
- ▼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(코입 노출 금지)해야 하며,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- ▼ 퇴실 시 수험생 밀집으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,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할 예정이오니, 수험생들은 시험실에서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 +120)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